

2026년 해양경찰정비창 기간제근무자(청사방호/교대) 채용 공고

해양경찰정비창 기간제근무자(청사방호/교대)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6년 7월 13일

해양경찰정비창장

1. 모집인원 및 분야: 기간제근로자(청사방호) 교대

지원코드	근무형태/인원	담당업무	근무기간	근무지
청사방호	기간제근로자 청사방호(교대) 1명	해양경찰정비창 청사방호· 경비업무 지원 및 대민업무 (민원인 응대 및 주차관리 등)	'26.8.14.~ '26.12.28.	해양경찰정비창 (전남광주 목포시 신항로 261-77)

※ 본 공고문에는 채용분야 주요 업무를 위주로 명시하였으므로, 채용 대상자는 해당부서의 업무분장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2. 기간제근로자(청사방호/교대) 근무조건

가. 근무기간: '26. 8. 14.(금) ~ '26. 12. 28.(월)

※ 근로계약기간 종료로 별도 연장 없이 근로계약 자동종료

나. 임금 : 직무등급 2급 직무 1단계 급여

다. 복리후생: 명절 상여금, 복지포인트 별도 지급

라. 4대 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마. 근무방법: 교대근무(3교대)

※ 수습 중인 자의 업무능력의 부족 또는 직무수행 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3. 응시 자격

가. 대한민국 국적소지자(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제외)

나. 18세 이상인 사람(2008.12.31. 이전 출생자)

다.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라. 해양경찰청 소속 고위공직자 등의 가족이 아닌 사람 * 이해충돌방지법 제11조

❖ **가족 채용을 제한받는 공직자의 범위**(이해충돌방지법 §11①)

- 소속 고위공직자 /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바. 「해양경찰청 공무원근로자 등 관리규칙」제18조 및 「국가공무원법」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해양경찰청 공무원 근로자 등 관리규칙 제18조(채용 결격사유)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사. 응시자격 요건(기준일: 원서접수 마감일(7.24)/ 서류전형 시 적용)

구 분	내 용
응시자격 요건	- 방호·경비 및 보안 등 관련 분야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관련 분야 : 경비업법, 청원경찰법 등에 따른 방호·경비 및 보안 관련 업무 및 경찰공무원·경호공무원·직업군인(부사관 이상)·교정직 공무원 경력

아. 우대요건 및 가점 사항(기준일: 원서접수 마감일(7.24)/ 서류전형 시 적용)

구분	내 용
우대요건	- 직무관련 근무경력 : 근무기간별 차등우대(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근무경력 제외) - 「경비업법」에 따른 일반경비지도사 또는 기계경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 무도단증 2단 이상 보유자(불임 1 무도단체 확인)
가산사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최대 5점)

자. 기간제근로자 우대요건 인정 무도단체 현황

구분	인정단체
대한체육회 가맹단체 (10)	- 대한태권도협회(국기원) - 대한유도회 - 대한검도회 - 대한가라테연맹 - 대한택견회 - 대한우슈협회 - 대한복싱협회 - 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 - 대한킥복싱협회 - 대한주짓수회 - 대한크라쉬연맹 '24.1.1. 인정 취소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지부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법인) 요건을 충족한 단체 (51)	- 대한기도회 - 대한국술합기도협회 - 대한국예원합기도협회 - 대한합기도협회 - 한민족합기도무술협회 - 대한용무도협회 - 대한합기도총연맹 - 대한합기도총협회 - 세계합기도무도연맹 - 대한합기도연맹 - KOREA합기도중앙협회 - 세계태권무도연맹 - 국제연맹합기도중앙협회 - 대한합기도연합회 - 대한호국특공무술총연합회 - 대한중앙무술경기협회 - 국제특공무술연합회 - 대한검도연합회 - 대한합기도유술협회 - 국제당수도연맹 - K3세계국무도총연맹 - 대한특공무술협회 - 세계경찰무도연맹 - 대한민국무관합기도협회 - 한국해동검도연합회 - 대한특공무술연맹 - 대한해동검도협회 - 한국해동검도협회 - 대한무예타이협회 - (사) 한국권투협회 '23.1.27 - 세계합기도협회 - 대한민국합기도중앙협회 - (사) 한국킥복싱협회 신규 - 한국경호무술협회 - 국술원 - 대한특전무술협회 인정 - 한국특공무술협회 - 대한민국합기도회 - 경찰무도교육원 - 세계용무도연맹 - 대한신무합기도협회 - 대한특수경호무술협회 - ITF태권도협회 - 한국무예진흥원 - 대한민국합기도협회 '23.1.27 - 대한프로태권도협회 - 대한민국해동검도협회 - 신대한기도합기도무술협회 인정 - 재남무술원 - 대한생활체육복싱협회 - 한국복싱협회 취소 - 한국정통합기도협회 - 특전사 특공무술 - 세계합기도연맹 - (사) 대한경찰경호무도연맹 '24.3.8 신규인정 - (사) 대한삼단봉협회 '24.1.17신규인정
기 타	무예 분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1) - 택견보존회

※ '23.1.26. 까지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 : 대한특수경호무술협회, 대한민국합기도협회, 신대한기도회합기도
무술협회, 한국복싱협회, 세계합기도연맹

※ '23.12.31.까지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하는 단체(1) : 대한크라쉬연맹

유 의 사 항

- 이력서 상에 기재한 관련 분야 근무경력은 채용분야와 관련된 직무경력에 한하여 인정되며,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 시간제 근무경력인 경우 주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며, 시간제 경력은 기준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경력(재직)증명서에 근무기간(연월일 단위), 주당 근무시간, 담당업무, 발급 담당자 및 전화번호 등이 정확히 명시되어야 함
- 경력(재직)증명서에 담당업무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증빙서류(근로계약서, 업무분장내역 등)를 별도 첨부
-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는 '4대 보험 중 1개 보험의 자격득실이력 확인' 및 '폐업사실증명서', '소득금액 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갈음하되 세부적인 관련분야 근무경력에 추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보완하여 증빙
-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로 당해 분야인지를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 단계에만 적용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4. 채용공고 및 응시원서 접수

가. 채용공고 : 해양경찰정비창 및 나라일터 홈페이지 게시

나. 서류 접수 기간 및 방법

1) 접수 기간 : **2026. 7. 22.(수) ~ 7. 24.(금) 18:00 <3일간>**

2) 접수처 : 해양경찰정비창 기획운영과 (061-260-2619)

※ 주소 : 전남광주 목포시 신항로 261-77 해양경찰정비창 기획운영계

3)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제출 또는 방문접수

- 접수기간 내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등기우편으로 제출

※ 인터넷 또는 택배로는 접수 불가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 이내 소인분에 한하여 접수 가능

다. 제출 서류(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 기간제근로자(청사방호) 채용시험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 1부 <별지 서식 1호>
- 응시원서 1부 <별지 서식 2호>
-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서식 3호>
- 직무수행 계획서 1부 <별지 서식 4호>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 서식 5호>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별지 서식 6호>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1부 <별지 서식 7호>

-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1부 <별지 서식 8호>
-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1부 <별지 서식 9호>
- 경력(재직) 증명서 1부 <별지 서식 10호>
-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반환을 원할 경우 작성) <별지 서식 11호>
- 주민등록 등·초본 각 1부
- 우대요건 등 서류 전형 평정에 필요한 증빙서류(해당자만)

※ 모든 제출자료는 견출지, 종이짜개 등을 사용하지 마시고 집게 혹은 클립을 이용하여 편철

※ 서류제출 시 [붙임2] 서류봉투 겉면 부착

5. 세부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공고기간	'26.7.13.(월)~24.(금)	해양경찰정비창 누리집.인사혁신처 나라일터
원서접수	'26.7.22.(수)~24.(금)	접수방법 :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 접수마감 : '26. 7. 24.(금) 18:00까지 ※ 응시번호는 7. 27.(월) 개별 통보 ※ 접수처 : 전남광주 목포시 신항로 261-77(달동) 해양경찰정비창 기획운영계(061-260-2619)
서류전형	'26. 7. 29.(수)	해양경찰정비창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6. 7. 31.(금)	해양경찰정비창 홈페이지, 개별통보
면접전형	'26. 8. 5.(수)	해양경찰정비창 소회의실
합격자 발표	'26. 8. 6.(목)	해양경찰정비창 홈페이지, 개별 통보 ※ 2026. 8. 7.(금)~11.(화) 계약서 작성
근무기간	'26.8.14.~'26.12.28.	최종 합격자 제출 서류(채용 신체검사서 1부)

※ 상기 일정은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6. 시험방법

가. 1차 심사: 서류전형

- 응시자격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 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 할 경우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3배수까지 합격자로 선정하며, 서류전형 결과 동점자 발생하여 3배수 초과시 동점자 모두 합격자로 결정

(적극적) 서류전형 평가기준 및 배점

- ① 자기소개서(20점), 직무수행계획서(20점)
- ② 우대요건(60점) : 관련분야 근무경력(50), 관련 자격증(10)
- ③ 가산사항(5점) : 저소득층(5)

* 동점자 발생시 전원합격 처리 / 가산사항은 서류전형 만점 배점 외 추가 가산

나. 2차 심사: 면접시험

- 서류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심사
 - ※ 평가기준 : ①(소통·공감)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②(헌신·열정) 국가에 대한 헌신과 열정적인 태도, ③(창의·혁신)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④(윤리·책임) 청사방호 근무자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⑤(전문지식) 관련분야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 위원회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 ※ '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불합격 기준) 위원회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합격자 중 동점자 발생시 ① 1차 서류전형 점수가 높은 자 ② 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많은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 최종합격자가 채용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거나, 최종합격자가 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면접순위 성적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 결정할 수 있음
-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등 토대로 질의·응답 (평가 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 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7. 유 의 사 항

- 응시원서는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응시 희망자는 응시요건에 맞는지를 잘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접수된 이후에는 기재 사항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 허위 기재, 기재 착오 또는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채용된 이후에도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는 채용연기가 불가하므로 학업(재학생) 등으로 채용 유예는 허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 응시자 현황, 합격선(컷라인) 등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 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 채용 신체 검사, 제출 서류 진위 확인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 될 경우 합격 및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채용 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 근로자로 채용된 이후 정규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것은 아니며, 공무원 채용시 가산점 등 혜택도 없습니다.
- 본 채용계획은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해양경찰정비창 홈페이지에 변경 공고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정비창 기획운영과 (☎ 061-260-2619)로 문의 바랍니다.

8. 채용서류의 반환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반환되며, 채용서류의 반환청구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30일 이내에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채용이 확정된 자이거나, 본 공고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
- 또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본 기관이 부담하나 특수취급 우편물(등기우편 등)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구직자가 부담함을 알려드립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접수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합니다.

붙임 1. 직무기술서 1부

2. 등기우편 발송 서류봉투 겹명 부착 자료 1부. 끝.

<별지 서식 제1호>

기간제근로자(청사방호) 채용시험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

응시분야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기간제근로자 (청사방호)			

■ 작성 및 제출 목록(총괄표)

구분	작성여부
1. 응시원서 (필수)	
2. 자기소개서 (필수)	
3. 직무수행계획서 (필수)	
4.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필수)	
5.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필수)	
6.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1부 (필수)	
7.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필수)	
8.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필수)	
9. 주민등록초본(남녀 모두 제출,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1부 (필수) ※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10.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필수) ※ 재직기간,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발급기관 연락처 반드시 기재	
11. 우대요건 등 서류전형 평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해당자만) ※ 응시자격 또는 우대요건·가점에 해당하는 자격증 사본, 서류 등	
12.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1부(반환을 원할 경우 작성)	

* 내용을 작성한 항목에 대하여 작성여부 란에 "O" 표시

* 위 순서대로 첨부하여 주시고, 좌측상단에 집게 혹은 클립으로 고정
(필요시 추가서류 요청 가능)

응시원서

1. 인적사항			
지원코드	청사방호	응시번호*	채용담당자가 기재함
성명	(한글)	병역사항	☐ 필 ☐ 미필 ☐ 면제 ☐ 해당 없음
	(한자)	응시분야	기간제근로자(청사방호)
현주소 (거주지)			
연락처	(본인)	전자우편	
	(비상시)		
성별	☐ 남 ☐ 여	복수국적여부	☐ 해당 ☐ 미해당

2. 자격사항

* 지원직무 및 우대 국가기술/전문자격, 국가공인민간자격을 기입해 주십시오.

자격증명	자격번호	발급기관	취득일자	자격증명	자격번호	발급기관	취득일자

3. 경력사항

* 지원직무 관련 경험 혹은 경력사항을 기입해 주십시오.

구분	소속	직무	근무기간	직무내용
☐ 경험 ☐ 경력				
☐ 경험 ☐ 경력				
☐ 경험 ☐ 경력				

* 직무활동, 동아리/동호회, 재능기부 등 직무와 관련된 주요 활용을 서술하여 주십시오.

*응시번호는 미기재, 지원코드 반드시 선택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지원자 : _____(인)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는 반드시 소정 양식을 다운 받아 워드 또는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
2.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됨
3. 『응시원서』는 다음의 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함.
 - ①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 ② 현주소 및 연락처(핸드폰)은 긴급연락이 가능하도록 정확히 기재
< 응시원서 접수사항, 응시번호, 면접시험 등은 핸드폰 문자메시지 통보 예정 >
 - ③ 자 격 : 관련 자격증명을 기재
 - ④ 경 력 : 관련 근무경력을 기재

<별지 서식 제3호>

자 기 소 개 서

응시분야	기간제근로자 (청사번호)	성명	(서명)	생년월일	
------	------------------	----	------	------	--

◎ 자기소개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 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별지 서식 제4호>

직무수행 계획서

응시분야	기간제근로자 (청사방호)	성명	(서명)	생년월일	
------	------------------	----	------	------	--

◎ 직무수행계획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 요망, 2매 이내로 작성

○ 작성요령

- 특별한 양식 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서론(정책·사업의 동향 및 전망 포함), 정책(사업)목표, 추진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함
- 보고서 매 장마다 쪽 번호를 부여
- 문서 마지막에 작성일자 기재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해양경찰정비창에서 시행하는 기간제근로자(청사방호) 채용 시험 응시자로서 **해양경찰정비창이 실시하는 응시자격,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등에 의해 있는 각종 개인 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채용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해양경찰정비창장 귀하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본인은 공직인사에 있어 인사담당기관이 본인에 대한 인사검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동법 제15조의 규정 등에 따라 인사담당기관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한 동의서의 복사본으로 인사검증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6년 월 일

☐ **본 인** (*는 필수 입력 사항임)

- | | | | |
|--------------|------------|------------|-------|
| ▪ 성 명 * | _____ (서명) | ▪ 생년월일 * | _____ |
| ▪ 자택전화 * | _____ | ▪ 휴대전화 * | _____ |
| ▪ e-mail * | _____ | | |
| ▪ 직 장 | _____ | ▪ 직 위 | _____ |
| ▪ 직장전화 | _____ | | _____ |

☐ **인사검증을 위해 제공되는 정보자료의 범위**

- 출입국 및 국적자료 ----- 법무부

<별지서식 제7호>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에 √ 표시를 합니다.

채용기관	기관명	채용방법	채용직위(직급)
	채용사유		
채용대상자 (확인인)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채용 예정일

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① 가족채용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있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② 예외 해당 여부	①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인가?	[] 예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채용대상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① “가족채용”의 가족은 「민법」 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응시분야	응시관서	생년월일	성명
기간제근로자 (청사방호)	해양경찰정비창		

목 록	해당여부
① 피성년후견인	☐ 해당 ☐ 해당없음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해당 ☐ 해당없음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⑦ 타 기관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⑧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 범죄	☐ 해당 ☐ 해당없음
⑨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 해당 ☐ 해당없음
⑩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⑪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응시자 본인은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제출서류에 허위 또는 부정 기재 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됨에 동의합니다.

2026. . .

성명 : (서명)

해양경찰정비창장 귀하

<별지서식 제9호>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로 재직 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해당 ☐ 비해당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여비 부당수령: 해당	해당 ☐ 비해당 ☐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해당 ☐ 비해당 ☐
3-2. 위 퇴직일(당연퇴직·파면·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해당 ☐ 비해당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해당 ☐ 비해당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 내)	해당 ☐ 비해당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해당 ☐ 비해당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해당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해당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생년월일 . . .

지 원 자

(서명)

2026. . .

해양경찰정비창장 귀하

<별지 서식 10호>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경 력 증 명 서

인 적 사 항	성 명	홍 길 동		생년월일	0000년00월00일																			
	주 소	부산 사하구 다대로 605번길 93																						
경력 사항	근무기간		직위 (직급)	근무 형태①	담당업무②	근무부서																		
	부 터	까 지																						
	년월일	년월일	대리		상세하게	00기업(00과)																		
	년월일	년월일	팀장		상세하게	00회사(00계)																		
	년월일	년월일	사원		상세하게	00회사(00팀)																		
상별 사항	포 상			징 계																				
	연월일	해당기관	종 류	연월일	해당기관	종 류																		
퇴 직 사 유																								
제출처	해양경찰정비창																							
용 도	경력확인용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주 소 : 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인 혹은 직인)				<table border="1"> <tr> <th colspan="2">발급자(혹은 인사담당)</th> </tr> <tr> <td>소 속</td> <td>총무과</td> </tr> <tr> <td>직 위</td> <td>팀장</td> </tr> <tr> <td>③연락처(필수 기재)</td> <td>010-000-0000</td> </tr> <tr> <td>성 명</td> <td>(인)</td> </tr> </table> <table border="1"> <tr> <th colspan="2">확 인 자</th> </tr> <tr> <td>소 속</td> <td>총무과</td> </tr> <tr> <td>직 위</td> <td>과장</td> </tr> <tr> <td>성 명</td> <td>(인)</td> </tr> </table>			발급자(혹은 인사담당)		소 속	총무과	직 위	팀장	③연락처(필수 기재)	010-000-0000	성 명	(인)	확 인 자		소 속	총무과	직 위	과장	성 명	(인)
발급자(혹은 인사담당)																								
소 속	총무과																							
직 위	팀장																							
③연락처(필수 기재)	010-000-0000																							
성 명	(인)																							
확 인 자																								
소 속	총무과																							
직 위	과장																							
성 명	(인)																							
① 근무형태 : 주당 근무시간 기재 ※ 예 : 주 40시간 ② 담당업무 : 수행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 ③ 발급자(혹은 인사담당) 연락처 정확히 기재																								

<별지 서식 제11호> ※ 반환을 원할 경우 작성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응시번호
주 소		
반환장소 (위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6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해양경찰정비창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붙임1] 직무기술서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지
해양경찰정비창	해양경찰정비창(광주전남 목포시 신항로 261-77 달동)
주요업무	○ 청사방호 업무 ○ 경비업무 지원업무 ○ 민원업무 ○ 기타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 등
필요역량	○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 마인드(공복의식), 공동체 마인드(협업의식) ○ 업무이해력, 안전수칙 및 규정을 준수하고 중시하는 자세
필요지식	○ 방호·경비 및 보안 등 관련 분야 지식 ○ 시설물 안전 및 민원인 응대에 관한 지식 등
응시자격요건	○ 「국가공무원법」 및 「해양경찰청 공무원직 근로자 등 관리규칙」의 결격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8.12.31. 이전 출생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 병역을 필 또는 면제 ○ 「이해충돌방지법」 제11조1항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적용을 받지 않는 자 ○ 방호·경비 및 보안 등 관련 분야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우대 요건	○ 관련분야 근무경력 ○ 「경비업법」에 따른 일반경비지도사 또는 기계경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 무도단증 2단 이상 보유자
가산사항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붙임2] 등기우편 발송시 서류봉투 겉면에 부착하여 반드시 기관 주소 발송

[보내는 사람]

응시구분	기간제근로자 (청사방호)
성명	
휴대폰	

--	--	--	--	--

해양경찰정비창장 기간제(청사방호)근로자 채용 제출서류 재중
[관계자 외 개봉금지]

※ 제출서류는 '26. 7. 22.(수)~7. 24.(금) 18:00까지 방문 또는 우편접수(소인분에 한함)

[받는 사람]

전남광주 목포시 신항로 261-77(달동) 해양경찰정비창
기획운영과 채용담당자 앞 ☎ (061) 260 - 2619)

5	8	7	6	2
---	---	---	---	---

등기 발송증 부착